

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업체코드		처리기한 즉시	
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	상호				용도		
	소재지						
	건축물등	지하층	지상층	연면적(㎡)	바닥면적(㎡)	동수	기타
	등급	[] 특급 [] 1급		[] 2급 [] 3급			
	관리권원분리 [] 해당 [] 해당없음	[] 복합건축물 [] 지하가		[] 도매·소매·전통시장			
[]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		[]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					
신고인	관계인	[] 소유자 [] 관리자 [] 점유자					
		성명 또는 상호·법인명		생년월일 또는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	전화번호 (휴대전화)	
	업무대행 [] 해당 [] 해당없음	상호		면허번호(일자)		사업자등록번호	
		대표자		전화번호		계약기간	
		기술인력	성명		자격등급(자격번호)		
소방안전관리자 (선임자)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전화번호	☎	
						HP	
	선임일자		자격등급		자격번호		
	경력기간		최종 교육일자		이메일		
	주소						
	총괄소방안전관리자		[] 해당 [] 해당없음				
선임증 등 발급	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증		[]발급 []미발급		선임이력 확인서	[]발급 []미발급	

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,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.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(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(자격수첩을 포함합니다)	수수료 없음
작 성 방 법		

1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직위란을 적습니다.
2.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인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란에 √표 합니다.
3. 관리권원분리란은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뒤쪽)

관리의 권원별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

명칭(대상)					등급	[]특급 []1급 []2급 []3급
대 표 자					전 화 번 호	
소방안전관리자					자 격 등 급	
주 소						
소방안전관리 대상물	지하층	지상층	연면적(㎡)	바닥면적(㎡)	동수	

명칭(대상)					등급	[]특급 []1급 []2급 []3급
대 표 자					전 화 번 호	
소방안전관리자					자 격 등 급	
주 소						
소방안전관리 대상물	지하층	지상층	연면적(㎡)	바닥면적(㎡)	동수	

명칭(대상)					등급	[]특급 []1급 []2급 []3급
대 표 자					전 화 번 호	
소방안전관리자					자 격 등 급	
주 소						
소방안전관리 대상물	지하층	지상층	연면적(㎡)	바닥면적(㎡)	동수	

명칭(대상)					등급	[]특급 []1급 []2급 []3급
대 표 자					전 화 번 호	
소방안전관리자					자 격 등 급	
주 소						
소방안전관리 대상물	지하층	지상층	연면적(㎡)	바닥면적(㎡)	동수	